

3.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보고

보건의료정책과장 : 이병철 ☎2133-7505 마약대응팀장 : 박행엽 ☎7517 담당 : 엄남숙 ☎3871

☐ 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(행정안전부)
-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(시민건강국, '23.12. 1.)

☐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검찰청 의뢰, 자의 치료 신청 등 마약류 중독환자 (서울시민)
- 사업내용 : 市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치료보호 심의 및 치료보호비(입원, 외래)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에 지급
- 전용예산 : 60,000천원(전액시비)

☐ 예산전용 사유

- 치료보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('21년 32명 → '22년 72명 → '23년(11월) 121명), '23년 입원치료가 외래치료 보다 많아 치료보호비 지급이 급증하여, 4차 국고보고금 60,000천원 결정('23.11.9)에 대한 시비 매칭 60,000천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용함

☐ 예산전용 내역 ('23.12.7.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변경요구액		변경 후 예산액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의약분야 관리체계 구 축	지역의료기능 강화	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	자치단체등 자본이전 (403)	자치단체 자본보조 (403-01)	1,781,175	-	60,000	1,721,175
		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	민간자본 이전 (307)	의료 및 구료비 (307-01)	462,800	60,000	-	522,800